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나62596(본소), 2022나62602(반소) 판결
[공사대금 · 하자보수비 등 청구]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나62596(본소), 2022나62602(반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19가단235584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승

담당변호사 이원석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변론 종결2022. 11. 24.

판결 선고2022. 12. 22.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19가단235584(본소), 2019가단14930(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643,000원 및 그 중 63,906,930원에 대하여 2019. 7.

5.부터 2022. 1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658,470원 및 그 중 28,922,400원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22. 1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 및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6,424,0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7,340,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203,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1)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6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83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에서 4행의 '2019. 1월'을 '2019년 1월'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가 행하여진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이 2018. 9. 7. 이루어진 점, ② 피고가 2019. 1. 18.자로 원고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은 이 사건 공사의 완료를 전제로 한 하자보수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인 점, ③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점, ④ 이 사건 공사에서 예정된 모든 공정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2018. 7. 26.경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나머지 공사대금 80,6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물에 추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보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청구할 권리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 보증금율 3%, 보증금액 11,124,000원, 책임기간 2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2018. 7. 26.경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2018. 7. 26.경 원고의 하자보증기간이 개시되어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0. 7. 26.경에는 이미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이행증권의 발생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2) 세금계산서 과잉발행으로 인한 차액분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3, 11호증(가지번호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과세 30%, 면세 70%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10,800,000원으로 정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15,377,908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범위를 위 하도급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인건비 청구 부분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었고, 그에 따른 2018. 2월분부터 2018. 7월분까지의 추가인건비 56,203,170원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1. 2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공사기간을 2017. 4. 1.부터 2018. 4. 30.까지로 연장하였고, 2018. 4. 30. 공사기간을 2017. 4. 1.부터 2018. 5. 31.까지로 다시 연장하였으며, 위 공사기간은 이후 또 다시 2018. 6. 30.까지로 연장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현장관리소장을 포함한 인건비로 2018. 2월분 급여부터 2018. 7월분 급여 합계 56,203,1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초사실에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직원들이 실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인건비는 3명분의 2018. 2월분부터 2018. 7월분까지 약 4개월 또는 6개월분 급여로 합계 56,203,170원인데, 원래 공사기간이 약 10개월 가량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3억 70,800,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추가인건비는 상당히 과도한 측면이 많은 점, ③ 원고는 2018. 6. 30. 이후 2018. 7. 26.까지의 공사기간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추가인건비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부분 (가) 관련 법리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2010다70230(반소)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8조에서 추가공사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총액제 계약으로 별도의 추가비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 중 건축주 요구로 피고에게 추가공사비 지급이 있을시 추가공사비를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12조에서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 증감으로 계약금액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며, 공사량에 대한 변동된 계약금액을 공사투입 전 하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추가공사로 주장하는 주방싱크대 세탁기 배수관 및 연결구 누락, 다용도실 급수, 급탕관 및 바닥 배수관 누락, 세대환기 후렉시블 호스 증가분의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건축주의 요구로 피고에게 추가공사비 지급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산정 방법이나 지급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사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거나 도급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0,6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 등이 매우 적은 편이고,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이 지급될지 불확실한 경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54611 판결 참조). 아래 3. 가.의 (1)항에서 살피는 바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6,736,070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16,736,070원은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미지급 공사대금 중 위 16,736,070원을 제외한 나머지 63,906,930원(= 위 80,643,000원 - 16,736,070원)에 대한 이 사건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7.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만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2, 3, 11, 15, 18,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F, G의 각 하자감정 및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이후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공사에 아래 표의 금액 기재가 있는 항목에 관하여 하자가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1)

1층 천장, 경량천장 재시공, 소방배관 누수, 강화마루 발코니 천장 보수 자재 및 보수, 2층 복도 알람벨브실 배관 오시공	5,079,1942) 감정사항 1-1 부분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원고 주장 금액 292,111원으로 산정함
2 H호, 화장실 세면대 파손 밀착불량시공 재설치 자재 및 보수	99,000
3 2층 소화전, 소화전 페인트 및 미장 미시공	342,778
4 지하 펌프실, 펌프실 누수 물체거 작업펌프 2개월 장비 임대	486,970
5 I 호, 화장실 문 개폐불량 원인 세면기 위치 오기 부착 바닥타일 재시공	2,180,383
6 J호, 자동식 소화기 미설치	574,358
7 2층 복도, 알람벨브실 배관 오시공	2,236,283
8 폐기물 산정, 이 사건 공사로 발생된 전체 폐기물을 산정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314,104

1층 천장, 경량천장 재시공, 소방배관 누수, 강화마루 발코니 천장 보수 자재 및 보수, 2층 복도 알람벨브실 배관 오시공	5,079,1942) 감정사항 1-1 부분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원고 주장 금액 292,111원으로 산정함
9 옥상 통기관 미시공	4,477,000
10 K호 천정누수	946,000
합계	16,736,070

피고는 위 16,736,070원을 초과한 20,585,267원이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16,736,070원을 초과한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자보수비용이 부당하게 과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거나, 원고가 직접 재시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직접 재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6,736,0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위 하자보수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같은 금액과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지체상금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8. 7. 1.부터 2017. 9. 7.까지 69일간 지체하였고, 이로 인한 지체상금 계산 내역은 76,755,6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체상금 76,75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공사기간을 2017. 4. 1.부터 2018. 1. 20.까지로 정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1. 21. 공사기간을 2018. 4. 30.까지로 연장하였고, 2018. 4. 30. 공사기간을 2018. 5. 31.까지로 다시 연장하였으며, 위 공사기간은 이후 또 다시 2018. 6. 30.까지로 연장된 사실, 이후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공사기간 말일 다음날인 2018. 7. 1.부터 2018. 7. 26.까지 26일간에 대한 지체상금 28,922,400원(= 26일 × 0.003 × 계약금액 37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오피스텔 사용승인일인 2018. 9. 7. 완공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체일수는 69일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2018. 7. 26.경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중 위 2018. 7. 1.부터 위 2018. 7. 26.까지 26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6. 30. 이후 2018. 7. 26.까지의 공사기간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5,658,470원(= 위 하자보수금 16,736,070원 + 위 지체상금 28,922,400원) 및 그 중 28,922,4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9. 1. 2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행하여진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일 다음날인 2018. 9. 8.부터 2019. 1. 25.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체상금 채권은 그 성질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9. 1. 18.자 공문에 그 지급기한을 2019. 1. 25.까지로 명시한 이상,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은 각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 및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석동

판사김현주

판사임효빈

1) J호 연수기 구매, 보일러 후렉시블 연결공사 부분의 경우 이 사건 견적서(갑 제4호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정사항 1-1 부분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원고 주장 금액 292,111원으로 산정함